

	보도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1.18(월) 조간부터 보도가능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, 행정자치부 지역금융지원과, 법무부 형사기획과,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, 대부업검사실		
책임자	김기한 과장(2156-9470)	담당자	김성진 사무관(2156-9471)
	이방무 과장(2100-4280)		오경석 사무관(2100-4287)
배포일	박세현 과장(2110-3269)	배포부서	장준호 검사(2110-3544)
	장병용 국장(3145-6770)		이길성 팀장(3145-6772)
	양일남 실장(3145-8260)		엄주동 팀장(3145-8262)
배포부서	2016.1.17.(일)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3매

제 목 : 금융위원회, 대부업체·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「상황대응팀 회의」 논의 결과

- ① 1.1일~1.14일까지 대부업체(6,443개사), 금융회사(2,426개사)를 점검한 결과, 위반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.
- ② 설 연휴 등을 감안하여 점검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, 위반사항 적발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.

1. 개요

- '16.1.15일(금)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규제공백에 따른 대응 조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「상황대응팀 점검회의*」를 개최함
 - * [참석] 금융위 사무처장(주재), 중소서민금융국장, 서민금융과장 / 행자부 지역금융지원과장 / 금감원 은행·비은행 감독담당 부원장보, 저축은행감독국장, 대부업검사실장
- 정부는 '대부업정책협의회' 의결을 거쳐 1.4일부터 대부업체·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전 「대부업법」상 최고금리 한도(연 34.9%)를 준수토록 행정지도 및 일일점검*을 실시 중으로,
 - * 특히, 금융위·행자부·금감원 등 관계기관간 금융권·대부업권 일일점검계획 수립 및 신속 보고·대응체계도 구축(☞ 1.6일 보도참고 자료)
- 금번 회의에서는 행정지도 이행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함

2. 지도 이행상황 점검결과

- ① (대부업체) 1.1일~1.14일 중 지자체·금감원의 일일점검 결과, 현재까지 “행정지도 위반 대부업체는 없는 것”으로 파악
 - ①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을 바탕으로, 약 9천개 대부업체 중 6,443개 대부업체(중복 포함)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하게 실시
 - ② 아울러, 금감원은 120개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상위 13개 대형 대부업체*에 대한 일일점검 실시 중
 - * '15.6월말 현재 전체 대부이용자의 68%(179만명), 대부잔액의 60%(7.4조원) 차지
- ② (금융회사) 동 기간 중 금감원은 총 2,426개 금융회사*의 금리운용 실태를 점검하였으며, 고금리 수취 사례는 미적발
 - * 저축은행 79개사, 상호금융 2,269개사, 여전사 78개사

➔ 금융위·행자부·지자체·금감원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 대응노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행정지도가 원활하게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

3. 향후 대응방안

- 점검결과에도 불구하고,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연휴를 전후하여 고금리 영업행위에 따른 서민층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,
 - 「대부업법」 개정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, 영세 대부업체 등의 행정지도 위반 사례 발생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
- 따라서, 지자체·금감원을 통해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권 및 대부업권에 대한 일일점검을 강도 높게 지속할 예정
 - 특히, 인력부족 지자체에 금감원 검사인력 24명을 지원(1.12일) 하는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철저한 점검

- 아울러, 검찰은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「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」(검사 244명, 수사관 431명 규모)를 중심으로
 -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 등 “불법사금융”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지속할 예정
- 금융위원회 “상황대응팀”은 정기적으로 점검현황을 종합하고, 위반 사례 발생시 시정권고, 현장검사 등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임
- 한편,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,
 -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「대부업법」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

※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(중점 홍보 필요사항)

- 1 정부는 금융회사, 대부업체에 대해 종전 법정 최고금리(연 34.9%)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.
- 2 금융소비자께서는 행정지도를 위반하는 금융회사·대부업체가 있을 경우 금감원(☎ 1332), 지자체 등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3 금융소비자께서는 연 34.9% 초과 이자를 수취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마시고,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